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3. 12. 14 선고 2023가단2976 판결 [사해행위취소등]

전 문

원 고 A 유한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래 담당변호사 박은태, 고요석

피 고 B

변 론 종 결 2023. 11. 16.

판 결 선 고 2023. 12. 14.

주 문

1. 피고와 C(D생)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8 지분에 관하여 2019. 12. 26.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한다.
2. 피고는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8 지분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등기과 2019. 12. 27. 접수 제7559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산유동화를 위하여 설립된 법인이다.나. 원고는 C을 상대로 2013. 7. 3.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부산지방법원 2013가소65451호)하여 'C이 원고에게 14,380,329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10. 25.부터 2013. 5. 15.까지는 연 17%,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다. 위 판결은 2013. 8. 9. 확정되었다.

다. C의 부(父) E는 2011. 3. 20. 사망하였다. 공동상속인인 F, G, H, I, J, K, C, 피고는 2019. 12. 26. 상속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단독 취득하고, C은 이 사건 부동산 중 본인의 상속지분 1/8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협의'라 한다)를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3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사해행위 취소 가부

1) 이 사건 협의의 사해행위 여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고, 한편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므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의 사실조회결과, 과세정보제출명령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협의 당시 C이 특별한 적극재산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반면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C은 원고에게 1,400만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바, 이 사건 협의는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에 해당한다.

2) 피보전채권의 존재 및 피고의 악의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협의 이전 C에 대하여 1,400만 원 이상의 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이는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한편 사해행위 취소소송에 있어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그 수익자 자신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것이고, 이 때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에 의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06. 7. 4. 선고 2004다61280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협의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반환의무의 발생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가 인정될 경우 수익자는 원상회복으로서 사해행위의 목적물을 채무자에게 반환할 의무를 진다(대법원 2018. 12. 28. 선고 2017다26581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협의로 인하여 피고 앞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바, 피고는 반환의무의 이행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 중 C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1/8 지분에 관하여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다. 소결론

피고와 C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 중 1/8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협의는 취소되어야 한다. 또한 피고는 C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1/8 지분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등기와 2019. 12. 27. 접수

제7559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동현

별지